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1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7.

발 의 자 : 김장겸 · 안철수 · 박충권
박덕흠 · 서천호 · 조정훈
이인선 · 강명구 · 김소희
추경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,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,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·처리·전송하는 사물인터넷(IoT)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

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7 신설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7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(이하 “보안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관계 행정기관·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보안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48조의7(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(이하 “보안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관계 행정기관·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실태조사 업무를 한국인터넷진</u></p>

홍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보안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